

『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구포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복지관 이용대상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으로 규정함
- 입욕료는 시장과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정함
-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수 있음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구포복지관(목욕탕)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, 수입금관리,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